

##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년월일 : 2000.12 .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안 제8조)
- 나. 수입증지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변경시 10일전까지 신고·신고토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 신고·신청토록 완화함(안 제12조)
- 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요건에 맞도록 개정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3. 관계법령

- 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증지의 판매) ① 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판매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판매인의 요건) 판매인은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판매인 계약신청 등)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판매인계약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동명등을 즉시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판매인의 의무) 증지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를 비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

실히 판매할 것

2. 증지를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할 것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판매인의 명의변경) 판매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예정 2일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증지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민원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판매인이 증지판매인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증지판매인계약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해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본문중 “10일”을 “2일”로 하며, “판매인지정”을 “판매인계약변경”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증지와 교환할 수 없

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지위승계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또는 계약의 해지 및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판매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판매소설치장소				
<p>&lt;판매소 약도&gt;</p>				
<p>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계약서

주 소 :

성 명 :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하구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수입증지판매소의 위치 :
-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3. 계약조건 :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규정준수

년       월       일

판매인 주소

성명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 명의변경 신청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기 계 약 자	주 소		명 의 변 경 요 구 자	주 소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명의변경사유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를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주소

성명 (인)

사하구청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판매인 지정) ①증지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p>	<p>제8조(증지의 판매) ①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판매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④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들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 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p>	<p>제9조(판매인의 요건) 판매인은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취소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p>
<p>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p>	
<p>제10조(판매인 지정신청) ①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판매인 계약신청 등)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인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lt;삭제 2000. 11. 10&gt;</p> <p>③구청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동명을 구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p> <p>제12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예정 10일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판매인이 증지판매인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p>	<p>②구청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판매인계약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교부를 받을 동명등을 즉시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판매인의 의무) 증지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원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를 비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할 것</li> <li>2. 증지를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할 것</li> </ol> <p>제12조(판매인의 명의변경) 판매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예정 2일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증지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급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4조(지정의 취소) ①구청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해제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다만, 민원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민원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p> <p>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판매인이 증지판매인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증지판매인계약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해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③판매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5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5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10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야 한다.</p> <p>1. 판매인이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p> <p>2. 판매인이 사망한 때</p> <p>3. 판매인이 30일이상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p> <p>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p> <p>제1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p> <p>제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익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구분청은 계기관리부서 분임정수관 및 동은 수입금 출납원 책임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22조(판매수익금 관리) 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p>	<p>&lt;삭제&gt;</p> <p>제21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익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구분청은 계기관리부서 분임정수관 및 동은 수입금 출납원 책임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후생 복지증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제26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26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지위승계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또는 계약의 해지 및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p>